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항 정비 및 별지서식 제1호 여권발급신청서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제2조의2)

나. 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10조제3항)

다.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 1) 긴급연락처 작성란 기능 개선
-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선
- 3) 민원인 이해 증진, 가독성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 개선, 강조 표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을 “법 제7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의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을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기존”을 “해당 로마자성명을 제1항의”로,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를 “함께”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로마자성명을 여권에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여권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추가나 변경 신청

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영 제9조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제1의3호”로, “영 제7조”를 “법 제4조의2 각 호 또는 제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 중 “영 제7조”를 “법 제19조제5항 중 “법 제4조의2”로, “영 제10조”를 “법 제4조의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검은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여권 선택란	※ 아래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만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없으면 일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58면 여권이 발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접수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종류	☐ 일반 ☐ 관용 ☐ 외교관 ☐ 긴급 ☐ 여행증명서(☐ 왕복 ☐ 편도)	여권 연수	☐ 26 ☐ 58
여권 기간	☐ 10년 ☐ 단수(1년) ☐ 잔여기간	담당자 문의 후 선택	☐ 5년 ☐ 5년 미만

필수 기재란				
※ 뒤쪽의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흰색 (배경의 무배경) 사진 · 색연필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3.5cm x 세로 4.5cm) · 머리(목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cm~3.4cm	여권 신청인	한글성명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 긴급연락처는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긴급 연락처	성명		관계 (신청인의)	
	전화번호			

추가 기재란		※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뒤쪽 아래의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을 읽고 신중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대문자)	성		
	이름		

등록기준지	※ 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姓)		※ 기재하는 경우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형태로 표기되며, 대문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내보 칸 안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배송 서비스	☐ 희망 ☐ 희망 안 함	(상세주소 기재)

1.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 「여권법」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④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⑤ 장애인증명서

접수 담당자 기재란			
접수번호			
특이사항			
심사란	접수자	심사자	발급자

(영수확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유의사항

1.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킬러로 인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신청서는 인쇄 후 검은색 펜으로 작성하시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재 사항을 작성 후 인쇄하시고, 서명은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는 기계로 읽혀지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여권번호는 바뀝니다.
5. 사진은 여권 사진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여권을 사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로마자성명 기재방법은 아래 별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자 및 발급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국내 휴대전화만 가능합니다.
8.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수여권으로는 발급지 기준 1회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로는 표기된 국가만 여행할 수 있습니다.
10.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입니다.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3.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4.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가 된 여권은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마자성명 기재 유의사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성 또는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들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
3.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미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중인 가족(예: 아버지)의 로마자 성(姓)과 일치시키기를 권장합니다.
4.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기되며[배우자 성(姓) 표기 및 로마자성명 띄어쓰기 포함], 「여권법 시행령」 제3조외2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120g/㎡]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변경하려는 로마자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 해당 로마자성명을 제1항의-----
함께-----
----- . 이 경우 신청인은 해당 로마자성명을 여권에 함께 표기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

은 <추 가>“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여권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의 로마자 성의 추가나 변경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

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은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여권에 표기한다.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 영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② (생략)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제10조(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1의3호 -----
----- 법 제4조의2 각 호
또는 제4조의3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u>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 ④ <u>제3항</u>은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u>제3항</u> 중 “<u>영 제7조</u>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은 “<u>영 제10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으로 본다.	④ <u>법 제19조제5항</u>----- -----<u>법 제19조</u> <u>제5항</u> 중 “<u>법 제4조의2</u> ----- -----<u>법 제4조의3조</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여권과	
연 락 처	(02) 2002 - 0133